

제 597 호  
1977.3.1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 
편집 : 문화공보관 조 용 하  
전화 75-7834  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전화 75-5444

# 시 보

## 차 례

◎ 조 례

- 제 1152 호 :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개정조례 ..... 3
- 제 1153 호 : 서울특별시묘지및장재장사용료징수  
조례중개정조례 ..... 3

◎ 규 칙

- 제 1681 호 :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중개정규칙 ..... 4

◎ 훈 령

- 제 466 호 : 서울특별시시민봉사반(동)설치운영  
규정폐지 ..... 8

◎ 고 시

- 제 62 호 :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결정및지적승인 ..... 8
- 제 64 호 : 도시계획재개발지구일부변경결정및지적승인 ..... 9
- 제 65 호 : 동청사위치변경고시 ..... 10

(이면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1457

계	보통계장	공	계장	문화공보관	문화공보관	공람
	동					일

제 66 호 : 사회단체등록취소고시.....	10
제 67 호 :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.....	10
제 68 호 :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지적일부변경승인.....	11
제 69 호 :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.....	11
제 70 호 :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지적승인및변경승인.....	13
제 71 호 :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결정 , 일부변경및지적승인...	14
◎ 공 고	
제 48 호 : 환기 계획공갈공고.....	15
제 49 호 : 일단의주단지조성사업완료공고.....	15
제 52 호 : 1977 년량철골짜치허예정지공고.....	16
제 53 호 : 직인개각공고.....	16
제 1 호 ( 관악구공고 ) : 동장직인개각공고.....	17
◎ 사 령 .....	19

**조**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훈 인

1977년 3월 15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152 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8 조를 제 49 조로 하고 제 4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48 조 (양수기점검등 위탁) ① 시장

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점검 및 교시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법인은 자본금 1,000 만원이상이어야 한다.

③ 제 1 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

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대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제 1 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, 수탁업무처리방법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묘지및 장제장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구 기 훈 인

1977년 3월 15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153 호

서울특별시묘지및 장제장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묘지및 장제장 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공원묘지 : 반봉분형 8.25㎡

<p>제 2 조 제 2 항의 별표 1 (묘지사용료)</p> <p>별표 2 (공원묘지관리비), 별표 3 (장제장사용료)를 다음과 같이한다.</p> <p>(별표 1) 묘지사용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반묘지 : 3.3㎡에 대하여 600원</li> <li>2. 공원묘지 : 반봉분형 1기당 (8.25㎡) 25,000 원</li> </ol> <p>(별표 2) 공원묘지관리비 4,000 원 반봉분형 1기당</p> <p>(별표 3) 장제장 사용료</p> <table border="0"> <tr><td>대인 (만 13 세이상)</td><td>1,800 원</td></tr> <tr><td>소인 (만 12 세이하)</td><td>1,200 원</td></tr> <tr><td>사 산 아</td><td>450 원</td></tr> <tr><td>유 골 개 장</td><td>750 원</td></tr> <tr><td>적출물 1 건 10 키로그람 한</td><td>450 원</td></tr> <tr><td>남 골 (만 2 년한)</td><td>1,500 원</td>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10px auto;">규 칙</div> <p>서울특별시 동장 인사규칙중 개정</p>	대인 (만 13 세이상)	1,800 원	소인 (만 12 세이하)	1,200 원	사 산 아	450 원	유 골 개 장	750 원	적출물 1 건 10 키로그람 한	450 원	남 골 (만 2 년한)	1,500 원	<p>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7년 3월 15일</p> <p>◎서울특별시규칙 제 1681 호</p> <p>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 7 조 (동장의 징계사유, 양정 및 감정기준) ①동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규칙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때</li> <li>2.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때</li> <li>3.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동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때</li> <li>4.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때</li> </ol> <p>②동장의 징계양정을 외결함에 있어서는 별표 1. 징계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
대인 (만 13 세이상)	1,800 원												
소인 (만 12 세이하)	1,200 원												
사 산 아	450 원												
유 골 개 장	750 원												
적출물 1 건 10 키로그람 한	450 원												
남 골 (만 2 년한)	1,500 원												

<p>③징계의결 요구된 동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자는 별표 2 - 징계양정감정기준 - 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정할 수 있다.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징계양정의 감정은 1회에 한하고 금품수수 및 별표 3 의 - 고질적인 비위 - 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</li> <li>2.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(공적상 및 창안상) 을 받은 자</li> <li>3.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</li> </ol>	<p>4. 서정세신을 출선수범하여 표창을 받은 자</p> <p>제 8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 인 이상 8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구청장이,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국, 실, 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출장소 권한 동장에 대한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위원중 1 명이상을 당해출장소 과장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임명해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--	--

(별표 1)

징 계 양 정 기 준

비위의유형 \ 비위의정도	비위의도가극심하고 교외가 있는 경우	비위의도가심하고 중과오로 인정되는 경우	비위의도가경하거나 중과오로 인정되는 경우
1. 성실의무위반	파 면	중감봉-경감봉	전책
2. 복종의 의무위반	파 면	파면-중감봉	경감봉-전책
3. 직장이탈금지위반	파 면	중감봉-경감봉	전책
4. 친절공정의 의무위반	파 면	중감봉-경감봉	전책
5. 비밀엄수의 의무위반	파 면	파면-중감봉	경감봉-전책
6. 청렴의 의무위반	파 면	파면-중감봉	경감봉-전책
7. 품위유지의 의무위반	파 면	파면-중감봉	경감봉-전책

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	비위의도가 극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비위의도가 심하고 중과오로 인정되는 경우	비위의도가 경하 저나 과오로 인 정되는 경우
8. 영리업무및경직규지위반	파 면	중감봉-경감봉	전책
9. 직 무 태 만	파 면	파면-중감봉	경감봉-전책
<p>※ ① 들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양적을 가중한다.                  ② 중감봉은 감봉 4월 이상 6월까지, 경감봉은 감봉 1월 이상 3월                  까지를 말한다.</p>			
<p>(별표 2)  <u>징 제 양 정 감 정 기 준</u></p>			
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제양성		제 7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된 징제양성	
파 면 중감봉 ( 감봉 4 월 ~ 6 월 ) 경감봉 ( 감봉 1 월 ~ 3 월 ) 전 책		중감봉 ( 감봉 4 월 ~ 6 월 ) 경감봉 ( 감봉 1 월 ~ 3 월 ) 전 책 경 고	
<p>(별표 3)  <u>고 질 적 비 위</u></p>			
업 무 명	비 위 사 례		비 고
위 생	○ 식품, 환경, 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• 위반 및 부당허가 • 법규 및 행정처분 위반사항 목인 • 행정처분기준 경감적용 • 무허가 및 허가취소업소 영업행위 목인 • 기타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상 부조리		

업 무 명	비 위 사 례	비 고
위 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소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업정지, 허가취소업소의 영업행위</li> <li>• 청탁, 압력 등에 의한 편중단속</li> <li>• 사전단속계획 누설 및 주지행위</li> <li>• 기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물의가 야기사례</li> </ul> </li> </ul>	
공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명분 무시 임의계약 행위</li> <li>○ 경쟁입찰사항외 수의 계약</li> <li>○ 고정입찰일제 위반</li> <li>○ 설계위반 시공목인</li> <li>○ 위반, 부당한 준공검사 및 처리</li> <li>○ 기타 공사계약시공, 준공상 부조리</li> </ul>	
건 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법부당한 허가</li> <li>○ 설계위반시공 목인</li> <li>○ 준공검사의 지연 및 사후관리 소홀</li> <li>○ 기타 건축설계, 시공, 준공상 부조리</li> </ul>	○ 위법건축물부당준공처리
세 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세의 부과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득세, 재산세 등의 과소조정 징수</li> <li>• 싯가표준액 불시업의 과세</li> <li>• 세원조사 부적정 및 소홀</li> <li>• 기타 세금부과 징수상 부조리</li> </ul> </li> </ul>	
청 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개처리 및 오물수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당요금징수행위</li> <li>• 영수증 (판인) 미교부</li> <li>• 수수료 불입거연 및 유흥</li> </ul> </li> </ul>	

업 무 명	비 위 사 례	비 고
<p>청 소</p> <p>수 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청소원의 상납행위 및 요구</li> <li>• 정화조의 부당준공 처리</li> <li>• 암수거 및 부당수거 행위</li> <li>• 기타 진개처리 및 오물수거상부조리</li> <li>○ 급수 사용료 조정 및 계량기 검침</li> <li>• 양수기 조작 부당 검침 및 소홀</li> <li>• 사용료의 효율적용의 부적정</li> <li>• 탁상 조정 및 과소조정</li> <li>• 부정 급수장치 목인</li> <li>• 부정 급수공사 목인</li> <li>• 기타 급수사용료 조정 및 양수기검침상부조리</li> </ul>	

훈 령

서울특별시 시민봉사반(동)설치운영폐지  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77년 3월 15일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

◎ 서울특별시 훈령제 466 호

서울특별시 시민봉사반(동)  
설치운영규정폐지

서울특별시 시민봉사반(동)설치운영규  
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2 호

도시계획시설 (연구시설)  
결정및지적·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연구시  
설)을 다음과 같이 결정및 지적  
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 
동법제 13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



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철호출장소 시민	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7.3.9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

가. 도시계획시설 (연구시설) 결정 및 지적승인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연구시설	강남구 가락동 462-5 의 61 필지	128,308㎡ (38,813평)	

※별첨 도면생략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4 호

도시계획재개발지구일부변경  
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재개발지구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74 호 ('76.11.2) 의 권한 위임에 의거 변경 결정됨

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3.10

서울특별시장

가. 재개발지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

구분	지구명	위 치	면 적 ( )		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
첨계친	제 4 지구	중구 신당동 217-34	650	감 109	741
7 가지구	제 4 지구	' 217-73	709	증 109	818
	제 9 지구	' 217-5	590	감 206	534
				증 150	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5 호</p> <p>동철사위치 변경고시</p> <p>서울특별시 일부 동철사의 위치를</p>		<p>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 공고한다.</p> <p>1977.3.10</p> <p>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</p>		
<p>다 음</p>				
동 명	위 치 변 경 내 용		이전일자	
	이 전 전	이 전 후		
성북구정릉 3 동	성북구정릉동 372-47	성북구정릉동 685-16	'77.3.5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6 호</p> <p>사회단체 등록취소고시</p> <p>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 항 제 4 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가. 등록취소단체</p>		<p>같이 사회단체의 등록을 취소하였기 동조제 2 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</p> <p>1977.3.12</p> <p>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</p>		
등록번호	단 체 명	대 표	소 재 지	취소사유
제 6.6 호	민속미보존위원회	석 재 선	용산구한강로 2 가 246	소재자불명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7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제 196 호 ( '74.12.29 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 시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에 대 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행정권 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</p>		<p>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 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77.3.14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

<p>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 산 103외 10호외 3필</p> <p>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</p> <p>3. 면적및규모 : 12,324㎡(3,728평)</p> <p>4. 시행자 주소·성명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22-59 재단법인 봉천학원 이사장 송 광 숙</p> <p>5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. 착수년월일 : 1977.3 나. 준공예정일 : 1977.12.31</p> <p>6. 위치및계획면적 : 별첨 (도면생략)</p> <p>7. 공사설계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</p>	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8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일부변경승인</p> <p>1. 건설부고시 제 34호 ('69.1.11) 고시된 중로 1-62호 노선 일부구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 일부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77.3.14 서울특별시장</p>
---	--

○ 노 선 조 서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정	종 점	비 고
기정	중로	1	62	20m	200m	서대문구 남가 좌동 356-1	서대문구 남가좌 동 70-110	
변경								위치일부변경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.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9 호</p> <p>주택개량유위한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</p> <p>1. 건설부고시제 145호 (74.5.13) 제 294호 (74.8.30) 및 제 18호 (75.2.8) 로 실시계획인가된 승인구역등</p>	<p>16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 309호 (76.12.18) 및 제 34호 (77.2.22) 로 실시계획변경 공람을 거쳐 변경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, 제 26 조 및 제 34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
---	---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고시로 1977.3.14  
서울특별시장

고 시 내 용

가. 사업시행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구역명칭	위 치	사업면적	비 고
송 인 구 역	종로·송인동 58번지일대	57,901㎡	사업기간 (인가일로부터 80.12.30 까지)
북아현계 2구역	서대문 북아현동 113 및 충정로 산 6번지 일대	14,989㎡	
서빙고계 1	용산, 서빙고 187 외 2번지일대	11,828㎡	"
고척구역	영등포, 고척동 62	28,810㎡	"
한남계 1구역	용산, 한남동 726	38,258㎡	"
명륜	종로, 명륜동 3가 3-15	98,010㎡	"
옥인	종로, 옥인동 산 3	48,899㎡	"
상도계 5	관악, 상도동 123	79,917㎡	"
봉천계 1	관악, 봉천 1동일대	172,073㎡	"
봉천계 2	관악, 봉천동 산 94	94,380㎡	"
봉천계 3	관악·봉천동 산 101	180,255㎡	"
봉천계 4	"	335,205㎡	"
봉천계 7	관악 봉천동 산 81	176,926㎡	"
사당계 1	관악 사당동 산 11	45,061㎡	사업기간 (인가일로부터 81.12.30 까지)
사당계 4	관악 사당동 산 12	1,195,831㎡	
옥수계 6	성동 옥수동산 1, 2	78,397㎡	사업기간 (인가일로부터 80.12.30 까지)
계	16개구역	656,140㎡	

나. 시행자: 서울특별시  
 다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
 당초: 인가일로부터 2개년  
 변경: 인가일로부터 2개년  
 80.12.30까지 (승인구역등 6개구역)  
 인가일로부터 2개년  
 81.12.30까지 (명륜구역등 10개구역)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70 호  
 도시계획시설(도로)  
 지적승인 및 변경승인  
 1. 건설부 고시로 기 결정 및 변경된  
 ○ 도로지적승인 및 변경조서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지적승인 및 일부변경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고시한다.  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 
 1977.3.14  
 서울특별시장

구분	등급	구별	번호	폭원	연장	기	점	종	점	비	고
지적승인	중로	1	145	20 <sup>m</sup>	340 <sup>m</sup>	청량리동		청량리동	(대 2-2)		
"	"	"	154	20 <sup>m</sup>	550 <sup>m</sup>	동빙고동 14 (대 1-37)		서빙고역	(대 3-25)		
"	"	"	157	20 <sup>m</sup>	1,300 <sup>m</sup>	구로제3공단 (대 2-52)		철산역	519 (중 1-112)		
"	"	2	13	15 <sup>m</sup>	430 <sup>m</sup>	보성중·교교앞		성북동고개	(중 2-14 중합)		
"	"	2	143	15 <sup>m</sup>	70 <sup>m</sup>	공능동 (대 1-3)		공능동 128	(서울지방성부지원)		
"	"	3	55	12 <sup>m</sup>	580 <sup>m</sup>	망우동 (구획정리지구계)		송곡여자중학교부근			
기정	대로	1	6	35 <sup>m</sup>	300 <sup>m</sup>	관악구 본동 379-1		노량진동	149-10		사육식묘지 알남측으로
변경	"	1	6	35 <sup>m</sup>	300 <sup>m</sup>	"		"	"		일부구간변경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71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 
일부변경및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  
를 다음과 같이 신설 결정 일부  
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  
법제 12 조와 제 13 조 및 행정권한  
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

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 
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 
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 
게 보인다.

1977.3.16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로결정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

로 선 조 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목원	연 장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3		6m	230m	마장동 404-3	마장동 166-1	
변경	"	"		"	"	"	"	노선폐지
기정	"	"		"	112"	마장동 399-28	마장동 404-9	
변경	"	"		"	"	"	"	노선폐지
기정	"	"		"	140"	행당동 160-20	마장동 399-5	
변경	"	"		"	"	"	"	노선폐지
기정	"	"		"	205"	행당동 168-74	행당동 304-1	
변경	"	"		"	"	행당동 168-73	"	위치변경
기정	"	"		"	45"	마장동 399-5	행당동 166-19	
변경	"	"		"	"	"	"	노선폐지
신설	"	"		"	120"	행당동 166-1	행당동 166-2	
신설	"	"		"	270"	천호동 457	성내동 74-47	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8 호

환지계획공람공고

-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54 호 (76.10.2) 로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로 사업실시 인가된 은수주택단지의 환지에 대하여
- 2. 도시계획법 제 86 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46 조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을 수립하이 동법제 33 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- 3. 관계도서 및 조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 자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한다.

1977.3.9

서울특별시장

공 랑 개 요

- 가. 사업명 : 은수주택단지조성공사
- 나. 시행위치 : 영등포구 은수동 산 12-1 일대
- 다. 공람범위 : 별첨조서및도면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9 호

일단의주택지구조성사업완료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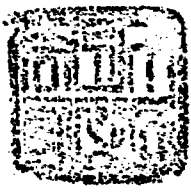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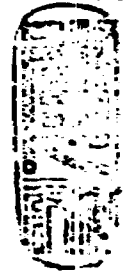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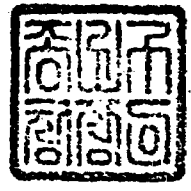


-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0 호 (77.2.3) 로 실시계획 인가된 일단의 주택지구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 46 조 규정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에 의거 둔 사업을 완료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발과와 마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77.3.9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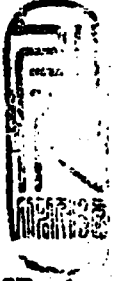



서울특별시장

<p>① 사업집행위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 42-1 일대 .</p> <p>② 사업의 종류 :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</p> <p>③ 사업의명칭 : 성산주택단지조성사업</p> <p>④ 준공면적 : 67,528 평</p> <p>⑤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시장</p> <p>⑥ 사업기간 : 1976.9 - 1977.3</p> <p>⑦ 준공도면 : 생략</p>	<p>1. 하천명 : 한강 (서울특별시 관내)</p> <p>2. 지역 : 10 개지역</p> <p>3. 지역별위치도 : 별첨도면과 같음</p> <p>4. 위치도 열람 : 관할구청 및 출장소</p>
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2 호</p> <p>1977 년 하천골재채취예정지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1977 년 하천골재채취 허가 예정지를 하천법 제 25 조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</p> <p>1977 . 3 . 9</p> <p>서울특별시 시장</p>	<p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3 호</p> <p>직인개각공고</p> <p>중토구청장의 직인 및 제인을 관인규정 제 9 조 규정에 외거 개각 하였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</p> <p>1977 . 3 .</p> <p>서울특별시 시장</p>



1. 사용일자: 1977. 3. 20부터		
2. 직인의 인영		
구		
직 인	직 인 (호적병사용)	계 인
		
신		
직 인	직 인 (호적병사용)	계 인
		
<p>◎ 관 악 구 공 고 제 1 호</p> <p>동장 직인 개 각 공 고</p> <p>당 구 봉 천 4 등 의 2 개 등 의 공 인 을 서 울 특 별 시 공 인 조 례 제 6 조 2 항 의 규 정 에 외 거 개 각 사 용 하 기 에 이 를 공 고 한 다.</p>		<p>1. 공인 개 각 사 용 및 폐 인 일 자 : 77.3.15 09:30</p> <p>2. 개 각 사 용 인 및 폐 인 의 공 인 명 및 인 영 : 별 청 참 조</p> <p>1977.3.4</p> <p>관 악 구 청 장</p>

공 인 개 작 신 구 인 영

봉천 4 동직인	1977.3.15 변경	사당 3 동장직인	1977년 3월 15일 변경
			
봉천 4 동계인	1977.3.15 변경	사당 3 동계인	
			
1977.3.15 변경	봉천 3 동계인	1977.3.15 변경	
			

**사 령**

◎ 1977.3.3

문수 3과 삼우보  
지방행정주사

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  
2호의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.

◎ 1977.3.7

주택정비과 길터  
지방행정주사
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◎ 1977.3.10

새마을지도과 모충터  
지방행정주사보
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◎ 1977.3.14

제2부녀복지관 박계순  
지방행정주사시보
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관악구 이계호  
지방행정사무관

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

1,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 
1월에 처함.

양서출장소 고병환  
지방행정사무관

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

1,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 
1월에 처함.

성명	발명사하	현부서	직급
유인근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, 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.	도봉구	지방행정주사
조익환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, 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	도봉구	지방행정서기보
양채득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, 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.	중구	지방행정서기보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강준식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.	중 구	지방행정서기보
김관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	관 악 구	지방행정서기보
강추신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 시대문구 근무를 명함.	,	, ,
김형근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 강남구 근무를 명함.	,	, ,
이재구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	,	, ,
김종준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.	마 포 구	, ,
이창현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 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.	,	, ,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신원철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.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	마 포 구	지방행정서기보
조기득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.	동 대 문 구	· ·
김영기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	성 북 구	지방행정서기
김인수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. 전체에 처함.	·	지방행정서기보
백승덕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	관 악 구	지방행정주사
한관수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	·	지방행정서기
황한규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	마 포 구	지방행정서기보
김영규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,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. 감봉 1월에 처함. 강남구 근무를 명함.	·	· ·

성명	발명사항	원부서	직급
김갑중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 견책에 처함.	도 봉 구	지방행정서기보
전 의 희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 견책에 처함.	〃	〃
김 광 협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 견책에 처함.	양 서 출 장 소	지방행정주사
정 재 용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 감봉 1 월에 처함.	동 대 무 구	지방행정서기보
박 성 호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 감봉 3 월에 처함.	〃	〃
<p>© 1977.3.14</p> <p>천 호 출 장 소 지방행정사무관</p> <p>성 북 구 지방행정사무관</p> <p>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</p>		<p>장 난 진</p> <p>임 진 형</p>	<p>© 1977.3.15</p> <p>소 년 기 술 원 지방행정사무관</p> <p>경 필 호</p> <p>서 울 운 동 장 운영담당 관에 보함.</p>

성명	발명사항	현부서	직급
채병훈	관계과	소년기술원	지방행정주사
함동식	동대문구	"	" 서기
정홍재	서대문구	"	" " "
박은서	아동과	소년직업보도소	" 주사
이종애	부녀사업관	"	" 주사시보
이병식	심복구	"	" 서기
조경희	천호출장소	"	" " "
임충빈	예산담당관	성동구	" 주사보
배한성	서부위생처리장	동부여자기술원	" "
이주호	관악구	보건연구소	" 주사
임영식	남부부녀보호지도소	관악구	" 서기
김진택	동부여자기술원	도봉구	" 주사
박예자	제2부녀복지관	부녀사업관	" "

<p>◎ 1977.3.16</p> <p>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장인석</p> <p>원예 의하여 그직을 면함.</p> <p>◎ 1977.3.17</p> <p>장인석</p> <p>지방비서관(3월상당)에 임함. 총무과(제2부시강실) 근무를 명함.</p>	<p>◎ 1977.1.18</p> <p>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김현중</p> <p>법무담당관 법제계장 직무대리 출명함.</p> <p>사회과 지방행정사무관 서동기</p> <p>지하철본부 기획계장에 보함. 서울특별시장</p>
--	---